

# 구(旧)신길7동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(안)

의안 번호	23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6. 6. 19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0조제①항, 제②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13조제②항제1호, 동법 제24조제①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17조제④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동의 후 시행하기 위한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- ① 신길7동 신청사 건립 이전에 따른 구(旧) 신길7동 청사를 중기대책으로 청사부지(구립어린이집 포함)에 민자를 유치하여 건물신축 후 기부채납 받아 우리구에서 일부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, 우선 한시적으로 사무실 협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함

## 3. 구(旧) 신길7동 청사 무상사용 허가 재산

- 위 치 : 영등포구 신길동 869
- 소유자 : 영등포구
- 대지면적 : 617.4m<sup>2</sup> (187평)
- 건축연면적 : 561.71m<sup>2</sup>
- 사용부서 :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

# 구(旧)신길7동청사무상사용허가동의안

1. 요구부서 : 자치행정과

2. 심의요구내역

허가 대상

소재지			(사용종목)		
영등포구 신길동 869	617.4㎡	561.71㎡	도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및 주차장	영등포구	

허가사유

- 사무실 협소, 전인차량 기사대기실 및 직원식당이 없고, 서고 등이 협소하여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에 무상사용 허가하여 주차장 및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

법적근거
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제①항제1호, 제②항제1호 (사용·수익허가)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②항제1호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
-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4조제①항제4호(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) 및 동법시행령 제17조④항제3호(사용료의 면제)

허가방법 : 무상사용

허가기간 :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

허가 후 활용방안

-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사무실 및 주차장으로 활용

근거

- 자치행정과-1896(2006.2.8)호의 "신길7동 청사 활용 계획" 구청장 방침과 관련임.

